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후보자의 사진 등이 표시된 특수투표용지 사용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36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후보자의 사진 등이 표시된 특수투표용지 사용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16.
3. 회 부 일 : 2024.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을 기재한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인데 장애인들은 온전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체장애인에겐 턱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 등으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151조제8항).

Ⅲ. 검토의견

1. 후보자의 사진 등이 표시된 특수투표용지 사용(안 제151조)

개정안은 시각장애선거인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선거인 등을 위하여 기존의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 이외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⑦ (생략) ⑧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u>視覺障礙로</u> 인하여 자신이 記票를 할 수 없는 選舉人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u>特殊投票用紙 또는 投票補助用具</u> 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⑨ (생략)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u>시각장애 또는 발달장애 등으로</u> ----- ----- ----- ----- <u>특수</u> <u>투표용지, 투표보조용구 또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u> -----. ⑨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투표용지를 점자로 작

성하거나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와 같은 도구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1)

<점자형 투표보조 용구>



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①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51조제8항에 따라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이라 한다)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71조(투표용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서식에 의하되, 점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글점자로 표시한다.

②구·시·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장애선거인 등을 위한 배려와는 달리 발달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알아보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시각장애선거인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선거인 등을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투표보조용구 외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발달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임.³⁾

또한, 개정안을 통해 발달장애선거인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쉽게 식별하지 못하는 등 투표용지 해석에 곤란을 겪는 선거인,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선거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발달장애선거인 등을 위해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2) “그림 투표용지 만들어달라!”... 발달장애인 1054명, 탄원서 제출, 비마이너, 2024. 10. 29.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73>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사용할지 여부는 후보자 사진, 정당 심볼이 발달장애선거인 등의 원활한 투표를 지원하는 효과, 소요 비용, 현재 제공 중인 특수투표용지, 투표보조용구의 효과 및 사진 삽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외국 사례를 보면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을 포함시키는 국가로 아일랜드가 있으며 정당로고를 포함시키는 국가로 영국,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등이 있음.

< 후보자 사진, 정당로고 투표용지 포함여부 해외사례 >

유형	국가명
후보자 사진	아일랜드
정당로고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칠레,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 후보자 사진, 정당로고가 포함된 외국투표용지 >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사용한다면 발달장애인 등의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및 투표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투표지가 특정되어 투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점, 투표용지 발급을 위한 사전투표 장비 등의 교체가 필요한 점, 후보자별 유·불리 논란 가능성, 인쇄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